

-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

발 의 자 : 유동찬 의원외 6인

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5년 12월 6일
-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9일

제안 이유

-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- 조례명을 「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,
- 이 조례의 근거법률 제명개정에 따라 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”을 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”으로 변경함. (안 제1조),
-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‘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’라는 내용을 삭제함. (안 제6조)

○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□ 검토 의견

○본 개정조례안은,

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및 여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타당 하다고 여겨집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
조례안